

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'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'을 다음과 같이 (수정)공고합니다.

2023. 7. 27.

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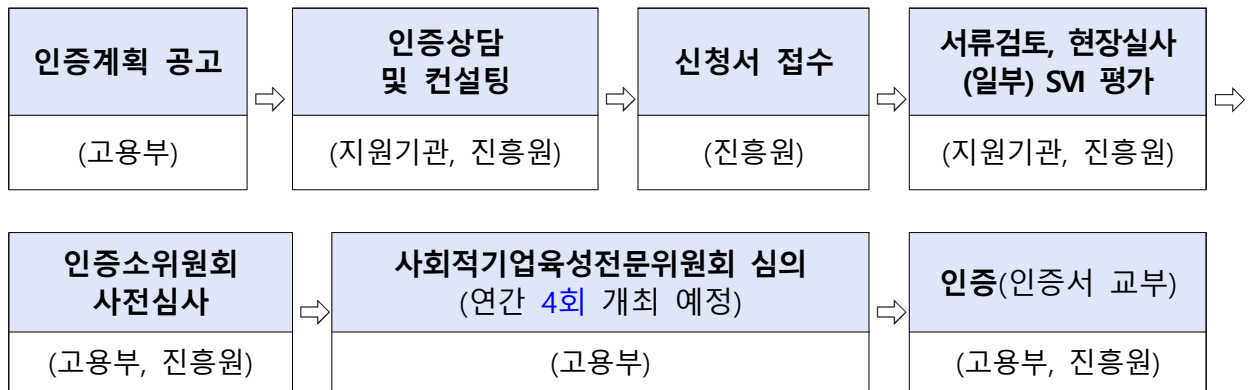
I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

1.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

-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: 제4차 인증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
 - 제4차 인증 신청은 2023.10.2.(월)까지 온라인(통합정보시스템)에 접수된 건에 한해 인증 심사 진행(제4차 인증 접수 마감일: 2023.10.2.(월).)
-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절차
 -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)으로 온라인 제출함
 - 진흥원은 인증신청 접수한 후, 서류검토·현장실사를 실시함. 이 경우 기타(창의·혁신)형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판단을 위한 SVI 평가(일부)를 실시함
 - 진흥원은 현장실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함

-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에서 심의하되, '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'(이하 '인증소위원회')에서 사전 검토 후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함
-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, 인증 결과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함

<인증심사 절차>



○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

- 인증심사는 연간 **4회차** 개최 예정으로, 차수별 심사일정안은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함